

서울특별시영등포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(안) 심 사 보 고 서

2001. 3. 15.
행정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01년 3월 5일 영등포구청장 제출
- 나. 회 부 일 자 : 2001년 3월 6일 회부
- 다. 상 정 일 자 : 제78회(임시회) 제1차 위원회(2001년 3월 9일 상정의결)

2. 제안설명의 요지 (제안설명자 : 건설교통국장 강민수)

- 가. 개정이유
 - 건설기계 근저당 설정등록, 변경, 말소등록시 수반되는 수수료중 조례로 위임되어 결정토록 되어 있는 건설기계 저당등록(말소)신청에 대한 수수료 규정을 신설하고자 한 것임.
- 나. 주요골자
 - 수수료의 종류 및 징수금액
 - 건설기계저당등록(말소) 신청시 1건당 1,000원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(전문위원 : 김대환)

동 개정조례(안)은 2000. 8.31 행정자치부 고시 제2000-15호에 건설기계저당등록과 말소신청수수료를 조례로 결정·징수토록 위임되었으며, 2001. 1.12 서울특별시시장의 본 조례 개정권고(안)이 통보되어 우리구의 여건과 타 자치구와의 형평을 고려하였고 입법예고를 마친 사안으로 주요내용은 건설기계 저당등록과 말소신청 수수료를 건당 1,000원으로 하여 본 조례 제3조 별표 제2호 “나목(12)”에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우리구의 해당 민원사무는 연간 2,500여건에 수입예상액은 약 250만원으로 예상되며 이는 행정자치부장관의 민원사무처리 기준표 변경과 서울특별시시장의 조례개정 권고(안)이 시달되어 조례개정이 불가피하였으며 부산, 대구 등 타 시도와 비교검토 한 바 적정하다고 사료되어 구청장이 제출한 개정조례(안)은 타당하다고 판단됨.

4. 심사결과 : 원안 가결

서울특별시영등포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(안)

의안 번호	166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2001. 3. 5.
제 출 자 : 영등포구청장

1. 개정이유

건설기계 근저당 설정등록, 변경, 말소등록시 수반되는 수수료중 조례로 위임되어 결정토록 되어 있는 건설기계 저당등록(말소)신청에 대한 수수료 규정을 신설하고자 한 것임.

2. 주요골자

가. 수수료의 종류 및 징수금액

- 1) 건설기계저당등록(말소)신청시 1건당 1,000원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규

- 건설기계저당법 제5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
- 민원사무처리기준표(2000. 8 .31 행정자치부고시 2000-15호)

분류번호	민원사무명	접수·처리	구비서류	수수료
건설기계관리 (1500000-0383)	건설기계저당등록 (말소)신청	즉시	신청서 1부 건설기계저당권설정계약서 1부	조례로 결정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없음.

다. 합의사항 : 합의되었음.

라. 입법예고(2001. 1. 30 ~ 2. 20)결과 : 의견 없음.

마. 기타 (1) 서울특별시영등포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(안) 1부
 (2) 신·구조문 대비표 1부. 끝.

서울특별시영등포구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영등포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(안)

서울특별시영등포구수수료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【별표】 제2호(각종 인·허가 및 신고사항) “나 목”(12)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2. 각종 인·허가 및 신고사항(38종)

(단위 : 천원)

종 목	단 위	수수료 금액	비 고
(12) 건설기계저당등록(말소)신청	1건	1,000	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=====

현 행	개 정 (안)																								
<p>【별표】 2. 각종 인 · 허가 및 신고사항 (37종)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 margin-top: 10px;"> <thead> <tr> <th style="width: 30%;">종 목</th> <th style="width: 10%;">단위</th> <th style="width: 20%;">수수료액</th> <th style="width: 40%;">비고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나. 신고·신청에 관한 사항 (1) ~ (11) “생 략”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“생략”</td> </tr> <tr> <td><신 설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종 목	단위	수수료액	비고	나. 신고·신청에 관한 사항 (1) ~ (11) “생 략”			“생략”	<신 설>				<p>【별표】 2. 각종 인 · 허가 및 신고사항 (38종)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 margin-top: 10px;"> <thead> <tr> <th style="width: 30%;">종 목</th> <th style="width: 10%;">단위</th> <th style="width: 20%;">수수료액</th> <th style="width: 40%;">비고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나. 신고·신청에 관한 사항 (1) ~ (11) “현행과 같음”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“현행과 같음”</td> </tr> <tr> <td>(12) 건설기계저당등록 (말소)신청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1건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1,000원</td> <td>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종 목	단위	수수료액	비고	나. 신고·신청에 관한 사항 (1) ~ (11) “현행과 같음”			“현행과 같음”	(12) 건설기계저당등록 (말소)신청	1건	1,000원	
종 목	단위	수수료액	비고																						
나. 신고·신청에 관한 사항 (1) ~ (11) “생 략”			“생략”																						
<신 설>																									
종 목	단위	수수료액	비고																						
나. 신고·신청에 관한 사항 (1) ~ (11) “현행과 같음”			“현행과 같음”																						
(12) 건설기계저당등록 (말소)신청	1건	1,000원																							

서울특별시영등포구오수·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(안) 심 사 보 고 서

2001. 3. 15.
사회건설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01년 2월 23일 영등포구청장 제출
- 나. 회 부 일 자 : 2001년 2월 28일 회부
- 다. 상 정 일 자 : 제78회(임시회) 제1차 위원회(2001년 3월 9일 상정의결)

2. 제안설명의 요지 (제안설명자 : 생활복지국장 조유근)

- 가. 개정이유
 - 상위법에 근거가 없고 민원인에게 불필요한 서류를 징구케 하는 규정과 정화시설의 야간청소지시 고시는 주간청소로 인한 교통유발 및 도시환경저해지역이 없으므로 규제개혁차원에서 삭제 및 개정하려는 것임.
- 나. 주요골자
 - (1) 정화시설의 야간청소 규정 삭제(안 제6조)
 - (2) 기술능력 보유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중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규정 일부 삭제(안 제9조제2항제3호)